

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

- 검토 보고 -

□ 제안이유

- 광역시설 및 자원의 공동개발 등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
-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업에 공동대처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고
-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광역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
- 8개 시·군이 참여하는 서해안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승인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협의회 구성 : 8개시·군
 - 서산시, 보령시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, 당진군
- 규약주요내용
 - 협의회위원 : 서산시장, 보령시장, 서천군수, 청양군수, 홍성군수, 예산군수, 태안군수, 당진군수(8명)
 - 협의사항 :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광역행정 중 다음사항
 -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
 -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
 - 도로의 신설 및 개수·보수
 - 버스노선의 신설·변경 및 폐지
 - 상·하수도 시설의 설치
 -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
 - 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 -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
- 실무협의회 구성 · 운영

- 상임위원 : 관계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업무 담당 실 · 과장
- 비상임위원 : 안전에 관련된 실 · 과장

- 미합의 사항 처리

- 미 합의된 안건은 관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다시 상정 후 미합의시 안건으로 상정 불가
- 2회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

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4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
- * 같은법 제142조제2항(지방의회의 결사항)

□ 검토의견

-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여 자치행정권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업 등에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8개 시·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 자치단체간의 협의 등으로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그동안 사전준비 회의와 창립회의를 통하여 8개 시장·군수가 공동으로 협의회 규약 서명 등으로 마련된 규약안이 의결과정에서 수정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7개시·군과의 처리방안과 문제점은 없는지 대안도 필요하며,
- 제4조(조직)제2항의 회장임기가 6개월로서 짧은 기간 윤번제로 맡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행정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는지와, 제11조의 필요한 경비부담에 있어 예산의 미확보로 인한 지출방법의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,
- 제8조(실무협의회)제2항 상임위원과 비상임 위원으로 구분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.
- 끝으로 지역의 특성과 개발에 있어 서북부지역의 8개 시·군이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, 이를 통하여 우리지역과 관련된 국가적인 대단위 현안사업에도 특별히 공동대처 하여 처리될 수 있는 방안마련도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.